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67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김위상・이종배・조지연

우재준 • 박충권 • 김선교

김용태 · 김기현 · 김재섭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함)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산불위험지수 위험 단계별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제1항).
- 나.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해당 주민에게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논두렁 · 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3항 신설).
- 라.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법률 제 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계산하여"를 "매일 계산하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산불위험지수 경보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한다.
 - ② 산불위험지수가 극심 또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민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논두렁・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금지
 - 2.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
 - 3.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제14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 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 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 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 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일 계산하여-----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산불위험지수 경보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 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 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한 다. ② 산불위험지수가 극심 또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 <u>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u>민 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제76조(벌칙)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⑤ (생 략)

제79조(과태료) <신 설>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u>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보가 발령 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논두렁·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금지
- 2.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
- 3.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제7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 제79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3 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과 같음)

<u>①</u> ~ <u>④</u> (생 략)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nderline{2} \sim \underline{5}$ (현행 제 1 항부터 제 4	:
항까지와 같음)	
<u>⑥</u> <u>제5항</u>	